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

의안 번호	1213
----------	------

제안년월일: 2018. 3.

제안자: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1. 조사목적

겨울철 한파 및 폭설의 영향으로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빙기 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사기간: 2018. 2. 20. ~ 3. 2.(11일간)

나. 조사위원: 12명(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다. 조사대상: 성동구청(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라. 조사대상사무: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 및 재난취약시설물

마. 주요 활동내용

- 집행부 재난안전대책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관내 재난취약시설물 현장 점검 실시 등

바. 조사결과: 지적사항 16건

- 시정·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8건

사. 결과조치: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 통보 요구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0조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회 기	제236회 임시회
조사기간	2018. 2. 20. ~ 3. 2. (11일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목 차

I. 조사의 목적	1
II. 특별위원회 구성	1
1. 명    칭	
2. 활동기간	
3. 위원현황	
III. 행정사무조사 실시경과	2
1. 대상기관	
2. 대상사무	
3. 조사내용	
4. 활동일정	
IV. 현장점검반 운영	4
1. 점검반 편성	
2. 반별 점검 현황	
V. 행정사무조사결과	6
1. 총    평	
2. 조사결과	
VI. 행정사항	8
VII. 결과처리 의견서	9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 I

### 조사 목적

올 겨울 예년보다 잦은 눈과 강력한 한파가 지속 발생하였으며, 특히 계절 변화의 시기인 해빙기에는 균열 및 붕괴 현상 등으로 각종 안전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큰 바,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사전에 재난취약시설물을 현장 점검하고 집행부의 관련대책 등 전반적인 행정 사항을 점검하여 재난없는 안전한 성동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II

###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2018. 2. 20. ~ 3. 2. (11일간)

#### ■ 위원현황

○ 위원선임: 12명

-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원장: 이 성 수 의원 / 부위원장: 엄 경 석 의원

-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위 의결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조사위원
이성수	엄경석	임종기, 윤종욱, 신동욱, 이상철, 김종근, 김해선, 박경준, 박정기, 은복실, 남연희

■ **대상기관:** 성동구청(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 **대상사무:**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 및 재난취약시설물

○ 노후 건축물 및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 건축물: 26개소 -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76개소

○ 위험 요소가 있는 담장·축대·석축·옹벽: 82개소

○ 급경사지 등 사면: 9개소

○ 일반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

- 일반건축 공사장: 17개소 - 재개발 공사장: 3개소

○ 하천 및 제방: 하천 4개소, 제방 3개소

○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45개소

○ 일반교량, 지하보·차도, 절개지 및 육교

- 일반교량: 4개소 - 지하보·차도: 9개소 - 절개지 및 육교: 23개소

○ 문화재: 1개소

## ■ 조사내용

○ **건축물 및 부대시설 분야**

- 건축물의 균열, 손상, 기울기, 지반 침하상태 등 점검

- 건축물 주변 지표면 상태 및 주요 구조부재의 동해 상태 점검

-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 점검, 옥상난간 균열·변형 점검

- 재해 발생 시 피난 통로 시설의 상태 점검

- 추락, 낙하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여부 등

## ○ 절개지 및 옹벽/석축 등 분야

- 절개지 상부 및 하단부에 인장균열, 단차, 침하 발생 여부
- 사면을 이루고 있는 경사도와 풍화상태 점검
- 토사유실, 낙석의 우려가 있는 부위가 있는지 점검
- 낙석방호시설이나 보강시설의 파손부위 여부 점검
- 옹벽의 균열, 파손, 함몰, 전도 등 상태 점검
- 옹벽 전면, 상부, 하단부 등 배수시설의 관리상태 점검 등

## ○ 건설공사장 분야

-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균열 여부 점검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공사장 점검
- 지하 굴착 공사장의 붕괴 위험 계측관리 상태 점검
- 보호막, 방호책, 낙하물 추락방지시설 등의 설치 상태 점검
- 기타 해빙기를 대비하여 토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의 재해 예방 조치 상태 점검 등

## ○ 도로·하천 시설물 분야

- 교대·교각의 침하상태, 교량 난간 및 날개벽의 붕괴 여부점검
- 제방·수문 등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 도로 성토·절토 비탈면 낙석 발생 여부 점검
- 성토·절토 부위에 축조된 도로 붕괴 여부
- 낙석 방지용 펜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 ○ 문화재 분야 - 성동구 소재 문화재 관리실태 등

## ■ 활동일정

위원회	일시	일정	장소
본회의 제1차	2018. 2. 20.(화) 〔10:00〕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장
조사특위 제1차	2018. 2. 20.(화) 〔11:00〕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조사계획서 작성	제2회의실
조사특위 제2차	2018. 2. 21.(수) 〔11:00〕	○ 조사계획서 채택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2회의실
본회의 제2차	2018. 2. 22.(목) 〔11:00〕	○ 조사계획서 승인 (조사계획서 집행부 통보)	본회의장
조사특위 제3차	2018. 2. 26.(월) 〔14:00〕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제2회의실
조사특위 제4차	2018. 2. 27.(화) 〔10:00〕	○ 현장조사활동 (조사결과 의견서 수합)	제2회의실 (관내현장)
조사특위 제5차	2018. 2. 28.(수) 〔11:00〕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제2회의실
본회의 제3차	2018. 3. 2.(금) 〔10:00〕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결과보고서 집행부 통보)	본회의장

## IV

### 현장점검반 운영

#### ■ 점검반 편성

반명	반장	조사반원	대상지역	사무보조 및 현장안내	
				의회	구청
1반	은복실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9개동)	이경채 (담당) 김정숙 (촬영)	김평선 (도시안전팀장) 나대승 (수행직원) 이창민 (운전직원)
2반	박정기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박경준, 남연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8개동)	양경희 (담당) 이종배 (촬영)	오상태 (보행환경개선 팀장) 노일두 (수행직원) 장욱 (운전직원)

## ■ 반별 점검 현황

조사반	대 상	장 소
1반	담장·축대 석축·옹벽	○ 금호동3가 1344-100 석축 ☞ 관리등급:C, 집중관리대상시설 ○ 옥수한남하이츠 아파트 옹벽 ☞ 관리등급:C,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노후건축물	○ 성수동1가 656-1274 노후주택 ☞ 관리등급:C, 집중관리대상시설
	일반건축 공사장	○ 성수동1가 685-700 공사장 ☞ 공정률 7%
	절개지	○ 응봉산 암벽공원(응봉동 269-4) 절개지 ☞ 관리등급: C, 집중관리대상시설
2반	노후건축물	○ 마장동 386-10 노후주택 ☞ 관리등급: C, 집중관리대상시설
	재개발 및 일반건축 공사장	○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장 ☞ 공정률: 89% ○ 사근동 231-28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 공정률: 50%
	절개지 및 교량	○ 대현산(행당2동 산30-4) 절개지 ☞ 집중관리대상시설 ○ 용답교(용답동 182) 교량 ☞ 집중관리대상시설

- 올 겨울은 예년보다 잦은 눈과 영하 15도 이하의 매서운 강추위로 기온변동이 심하였고, 계절이 바뀔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 해빙기에는 지반약화와 동결·융해의 반복으로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여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6건을 적출**하였음.
-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인 관내 노후 건축물, 재개발 및 일반 공사장,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등 위험 요소가 내재된 집중관리 대상시설물과 공공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련 안전 대책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여부도 점검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도록 하였음.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안전관리과에서 『2018년 성동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해빙기 뿐만 아니라 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노후주택, 소규모 공사장 등 사적 시설물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점검의 한계와 부실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보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집중관리시설 등 재난안전취약시설물 중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취약시설물로 지정·관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수 등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및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하고 편안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금번 해빙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의견을 구(區) 안전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2 / 조사결과

구 분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16	8	8	

※ 행정사무조사 결과처리 의견서 내역 별첨

VI

**행 정 사 항**

-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및 조치결과 보고 .. 구청 관련부서
  - 제출기한: 2018. 3. 26.(월)
  - 제출부수: 20부
- 수범사례 우수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상신 요망 ..... 총무과
  - 표창대상

연번	부서명	직 급	성 명
1	토목과	시설6급	조영두
2	안전관리과	시설8급	이창수

붙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의견서 1부. 끝.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의견서

■ 제 1 반 (반장: 은복실 위원, 반원: 임종기·엄경석·윤종욱·이성수·신동욱 위원)

연번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
1	<p>○ 응봉산 암벽공원 절개지</p> <p>- 인공암벽 좌측으로 큰 빙벽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 해빙기에 얼음이 녹아 떨어지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설치된 추락방지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수에 대한 대비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인공암벽 우측 토사물 유실과 낙석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p>	시정·처리 요구
2	<p>○ 응봉산 암벽공원</p> <p>- 겨울철 한시적으로 색다르게 빙벽등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p>	건의사항
3	<p>○ 성수동1가 656-1274 노후주택</p> <p>- 담장 벽체 탈락 및 균열로 노후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가스관 누출과 전선 난립으로 위험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재건축 정비구역이므로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통해 주택 철거 및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바람</p>	시정·처리 요구
4	<p>○ 성수동1가 685-700 공사장(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현장)</p> <p>- 2개동 총 280세대 규모의 대형 공사장인 만큼 해빙기에 토사 유실 및 굴착공사 시 붕괴, 낙하물 추락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p>	건의사항
5	<p>○ 성수동1가 685-700 공사장(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현장)</p> <p>- 공사장 주변에 비산 쓰레기와 적치된 공사 자재는 정리하여 보행자와 통행차량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시 주의하여 주기 바람</p>	시정·처리 요구

연번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
6	<p>○ 금호동3가 1344-100 석축</p> <p>- 석축 표면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석축 내 배수구 미설치로 인해 붕괴 우려가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재개발 추진을 통해 시설물 철거 및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바람</p>	건의사항
7	<p>○ 옥수한남하이츠 아파트 옹벽</p> <p>- 3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20년 전 시공사에서 실시한 하자보수 및 보강공사로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음. 향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실시하기 바람.</p>	시정·처리 요구
8	<p>○ 옥수한남하이츠 아파트 옹벽</p> <p>- 옹벽을 경계로 용산구와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인 만큼 향후 시설물 개선작업 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기 바람</p>	건의사항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의견서

■ 제 2 반 (반장: 박정기 위원, 반원: 이상철·김종곤·박경준·박정기·남연희 위원)

연번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장동 386-10 노후주택</li> <li>- 벽의 균열, 수도관 파열로 주택 내 얼음 방치, 빗물받이(차양)의 떨어질 위험 등 주택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위험하니 건물주에 통보하여 보수 및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요함</li> </ul>	시정·처리 요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장동 386-10 노후주택</li> <li>- 이 일대 주택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해 위험요소가 많으니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재개발 추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바람</li> </ul>	시정·처리 요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근동 231-28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장</li> <li>- 공사장 주변에 학교가 인접해 있어 공사장 가림막·비계 철거 등 공사 시 소음, 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하기 바라며 공사 관련한 민원 발생 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바람</li> </ul>	건의사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근동 231-28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장</li> <li>- 주변 도로에 공사차량이 상시 주차함에 따라 보행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사자재의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였는지의 여부 검토바람</li> </ul>	시정·처리 요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답동 교량</li> <li>- 교량의 안전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교량 위 펜스,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므로 도색 등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li> </ul>	시정·처리 요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장</li> <li>- 외부공사는 마무리되어 큰 위험요인이 없으나 해빙기를 대비하고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파트 입주 후 결로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건의사항

연번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
7	○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장 - 공사 중 발생한 민원은 완공 전까지 모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건의사항
8	○ 대현산 절개지 - 안전관리는 대체로 잘 되어있으나, 절개지가 아파트 놀이터와 인접하여 특히 해빙기에 낙석 등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있으니 세심한 관리 및 점검 요함	건의사항

※ 참고사항

- 시정요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 처리요구: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건의사항: 해당기관이 앞으로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